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연금합산제도 적용〉

■ 윤종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6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8
[참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의안번호 2213981) ..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종균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
3. 회부연월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역연금(職域年金)은 총 4개로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음.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역연금은 연금 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경우에만 재직기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직원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략)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퇴직한 공무원· <u>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u> (이 법, 「 <u>군인연금법</u> 」 또는 「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 」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 ----- <u>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u> ----- ----「 <u>군인연금법</u> 」, 「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 」 또는 「 <u>별정우체국법</u> 」-----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생략)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	② ----- ----- -----

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략)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이 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유족(제33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

-----.

1.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의 직원-----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국방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한다)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 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①·② (생략)

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50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

라 한다)은-----「군인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

-----.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정

우체국연금관리단, 「국민연금

법」-----

-----.

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u>국민연금공단</u> 또는 기관·법인·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략)	----- ---<u>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국민 연금공단</u>----- -----. ④·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의 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 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검토의견

현행법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에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한편, 정부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해 별정우체국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²⁾³⁾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우체국”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廳舍)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에 따라 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급여)

-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급여
(중간 생략)
 2. 유족급여
(이하 생략)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에 합산할 수 있는 재직기간에 별정우체국연금의 적용을 받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⁴⁾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인 우정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별정우체국연금의 부담금 비율 등 주요제도가 공무원연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직기간 합산 제도를 별정우체국 직원에게도 적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음.

《별정우체국법과 공무원연금법 비교('24년 기준)》

구 분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대 상	별정우체국장, 사무원, 집배원	공무원 등
재직자	3,258명	129만 2,545명
연금 수급자	2,677명	69만 685명 ※ 퇴직연금 60.2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분할연금 0.1만명
비용 부담의 원칙	▶직원 : 개인부담금(기준소득월액의 9%) ▶피지정인 : 피지정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9%, 국가가 전액 부담)	▶공무원 :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9%) ▶국가 : 부담금(보수예산의 9%)
보전금	정부조직의 개폐 등 특수한 사정으로 부담금 등으로 지출 총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부족분 지원할 수 있음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지출 총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부담하여야 함
책임 준비금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u>적립할 수 있음</u> ※ 적립기금 1,050억원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u>적립하여야 함</u>

자료: 인사혁신처

4) 참고로 공무원연금과 상호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한 군인연금과 사립학교직원 연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도 같은 의원(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각 소관 위원회에 계류중임.

다만, 별정우체국장 직위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라도 별정우체국 피지정인의 추천에 따라 별다른 선발 절차 없이 별정우체국장 임용이 가능하다는 점⁵⁾ 등에서 공무원과 다른 인사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공무원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별정우체국직원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정책적 필요성과 공무원연금 재정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별정우체국의 지위 관련 현황 》

- (규정) 별정우체국장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위를 승계(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하거나 타인이 승계하도록 추천(제4조)할 수 있음
※ 반면, 공무원의 경우 임용 시 경쟁시험이 원칙임(국공법 제28조)
- (판례) 통상 별정우체국 직원의 고용주는 별정우체국장(2020가합547246)이지만, 사안에 따라 국가의 고용책임을 인정(2022나11684)*하는 경우도 존재
※ 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별정우체국 직원이 총괄 우체국(정부기관)에 파견근무

인사혁신처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재직기간의 합산을 확대해 수급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

5)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나 배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제4조(국장의 임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장으로 임용한다.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피지정인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6) 보전금 추이(결산 기준) : '21년 3.2조원 → '22년 4.4조원 → '23년 5.8조원 → '24년 7.5조원

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별정우체국 직원이 공무원을 비롯한 여타 직역연금 가입자(군인·사립학교 직원)와 임용 등에 있어서의 동일성 여부와 공무원연금과 별정우체국 모두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임.

우정사업본부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와 교육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직역연금의 재정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참고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의원, 의안번호 2213981)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생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 · 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 우 손자·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 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 정한다.	② ----- -----, ----- -----.
1. 19세 미만인 사람	1. 25세-----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 에 있는 사람	2. 25세-----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 자·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4. ----- -----25세가-----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33조의4(연금액의 이체) ①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금·퇴역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직원으로 임용되어 제34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을 받은 후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그 퇴직한 사람 또는 그 유족(제24조의6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퇴역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24조의6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

③ ~ ⑤ (생 략)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u>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27조제2항·제3항,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